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25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가.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사전안내 항목을 확대 제공하고 안내 내용에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여 안내
 -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시 유의사항 및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등의 도움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 * 사전안내 자료 : ('24년) 64개 항목, 36만개 법인 → ('25년) 67개 항목, 38만개 법인
 맞춤형 절세 도움말 : ('24년) 37종 → ('25년) 40종
 신고오류검증 서비스 : ('24년) 43개 유형 → ('25년) 45개 유형(삭제1, 추가3)
 자기검증용 검토서 : ('24년) 23종 → ('25년) 24종
- ◆ 신고과정에서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확인·수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보완하고 항목을 확대 제공

☑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신고사항·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
 - * 특히,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시 오류가 잦은 항목을 종합하여 도움자료로 제공
- 납세자가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 제공
- 공제·감면 신청 등의 적정여부를 신고단계에서 확인하는 '신고오류검증 서비스' 제공
-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서비스' 제공
- 사전안내와 연관되는 세법내용,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개별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내하는 '세법도우미' 제공
- 납세자가 연도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소득을 변동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움정보 제공
- 오류가 빈번한 분야, 실수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 등에 대한 '자기검증용 검토서' 제공

나.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고

- ◆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간편신고서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시 납세자가 어려워하는 세법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 확대 제공
- ◆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
 -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vs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을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사전안내와 PPT·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제공

다.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정밀 검증

- ◆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
 -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 ◆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22.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여 확대 제공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전자(홈택스),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 홈택스경로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으로 검색 > 청색 바탕 ‘홈택스 메뉴 1건’ 항목 아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 (조특법§10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외)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제출 서류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1.1.부터 시행
-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전자(홈택스),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 홈택스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 연구과제만 선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 확정 전이라도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기술검토)만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 서류	<table border="1"> <tr> <td>신청서</td> <t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td> </tr> <tr> <td>첨부서류</td> <td>• ① 연구개발보고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td> </tr> </table>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① 연구개발보고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신청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① 연구개발보고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구분

구 분	정 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연구개발활동 및 비용 적정 여부	기술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기]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에 지출한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최대 50%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당기 지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5% • 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50% → ①, ② 중 선택하여 적용 		

- ◆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제외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제도개요 및 신청서 서식 게재
 - * 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2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법§19【손금의 범위】**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p.20)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법§19【손금의 범위】**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22)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법§19【손금의 범위】**, **법법§25【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22)을 활용·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법§19【손금의 범위】

(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 ◆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 업무목적과 관련 없이 주택을 보유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법법§52【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법§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법§19【손금의 범위】

(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의 손금 계상 여부

- ◆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
 - * 법법§19【손금의 범위】, 법법§27【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 ☞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p.3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p.3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p.3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서식」(p.38~4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p.4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p.42),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p.43),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식」(p.46), 「동일 과세연도 공제·감면 중복여부 검토서식」(p.47) 을 활용·검토

(1)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자법인)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법인으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23사업연도 자산총액 6,500억원 A법인이 40%를 소유한 B법인이 '24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조특령§2【중소기업의 범위】

(2) 중복지원 배제대상 공제·감면 중복 적용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 동일 사업연도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

- (사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동시에 적용

* 조특법§127【중복지원의 배제】

- ◆ (동일 사업장 세액감면 중복적용) 동일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되는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을 동시에 적용

* 조특법§127【중복지원의 배제】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공제·감면 적용) 당기순이익에 9%(12%)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적용

- (사례) 산림조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조특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의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3,15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
- ◆ (감면사업 결손금을 감면소득에 미합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의 등을 제외한 감면소득에 감면사업의 결손금을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사례) 제조업·건설업 겸영 법인이 건설업 관련 결손을 감면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감면소득을 과다하게 계산
- ◆ (감면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 ◆ (감면 한도 초과)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연도 대비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과다 적용
 - (사례) '23년 대비 '24년 2명 감소로 한도액을 감액 계산(1억원 - 500만원 × 2명)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조특법8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통칙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 ◆ (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 ◆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 ◆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의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8사업연도에 창업 후 '19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3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4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 ◆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 조특법§6, 조특령§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통칙6-0 ...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 (사례) '24.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4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 ◆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 전담부서 등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인정취소된 경우
 - (사례) '24.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4.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2년 개업한 법인으로 '23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4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 ◆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 조특법§10, 조특령§9【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6

(6)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오류

- ◆ (고용이 감소 후 추가납부 미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감면을 적용 받은 법인 중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공제받은 다음(다다음)사업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미적용
 - (사례) '22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23사업연도에 '22사업연도보다 3명 감소하였으나 감면분 추가납부 하지 않음
 - * 조특법§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 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등

(7)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오류

- ◆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당기발생액이 있는 법인 중 직전 대비 당해사업연도 고용이 감소하였음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3년 상시근로자 수가 88.3명이고 '24년 상시근로자 수가 85.2명이나 세액공제 신청
- * 조특법§29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 본사 등 지방이전 감면 적용 오류

- ◆ (본사가 수도권인 기업 감면 착오 적용)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중 본사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함에도 감면을 적용
 - (사례) '22년 식료품 도소매 영위 법인(중소기업 아님)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였으나 '22,'23년 본사이전 감면 신청
- * 조특법§63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9) 농업회사법인 감면 적용 오류

- ◆ (감면기간 초과 적용)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감면을 받은 법인 중 과거 5년 전에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5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8년에 설립된 법인이 '19년부터 최초로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 발생하여 '23사업연도까지 감면대상기간이나 '24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 ◆ (감면을 착오 적용) 감면을 50%(최저한세 적용) 적용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100%(최저한세 적용 제외)를 적용
 - (사례) 농산물 가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100%를 적용
- ◆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 보조금 수취 법인으로 감면소득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고 감면 적용
 - (사례)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 ◆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소득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한 법인으로 감면소득에 유형자산처분이익 포함하여 감면 적용
 - (사례) 유형자산처분이익 720만원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감면 신청
 - * 조특법§68【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0)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법인의 세액감면 오류

- ◆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법인 배제)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었으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요건을 규정하여 미등록 법인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조특법§66~68【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오류

- ◆ (청년 고용 감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2차, 3차 청년 등 상시근로자 세액공제를 신청
 - (사례) '23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5명, '24사업연도에 청년 수가 13명이나 '23사업연도 청년 등 2차분 세액공제를 적용
 - * 조특법§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p.32)을 활용·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 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 '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p.23),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p.24)을 활용·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 법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령§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마.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 법법§22【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 법법§40【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바.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임

* 법법§4【과세소득의 범위】

(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법§4【과세소득의 범위】

(3) 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 법령에 열거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법§4【과세소득의 범위】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 법법§15【익금의 범위】, 법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 법법§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 세무상 조정소득금액(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대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순이자비용(이자지급총액과 이자수취총액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 시 비용공제된 지급이자가 적정기간내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 처분
 - * 국조법§24【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국조법§25【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4)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 법법§15【익금의 범위】, 법법§41【자산의 취득가액】

(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 ◆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 ◆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될 수 있음
 - * 법법§15【익금의 범위】, 법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 법법§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아.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법§4【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②+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 법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령§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특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특령§69【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가운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단체 외의 기타 단체인 동창회, 종중 등과 같이 공익성이 없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의 경우 준비금을 손금처리 하지 않도록 안내

* 법법§29【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령§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자.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 법법§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p.28)을 활용·검토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수의 차량을 통합하여 작성하지 않고 각각의 차량별로 차종, 취득가액, 관련비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 법법§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 법법§19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대손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p.25)을 활용·검토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 법법§13【과세표준】
 - ☞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의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p.29)을 활용·검토

(5)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출한 법인

- ◆ '18.2.21.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법§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6)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 ◆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법§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령§50【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3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 1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⑪ 차이 (③-④-⑩)
① 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⑨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⑫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⑫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⑬ 차이 (⑮-⑯-⑫)
⑬ 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⑲+⑳+㉑)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㉑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⑲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⑮ 수취 제외대상 금액	⑯ 차이 (⑰-⑱-⑮)
⑰ 구분	⑱ 코드	⑲ 과목명	⑳ 금액	㉑ 계 (⑳+㉒+㉓+㉔+㉕)	신용카드 등		㉓ 현금 영수증	㉔ 세금 계산서	㉕ 계산서		
					㉒ 법인	㉓ 개인					
㉖ 소 계											

4. 합계금액

㉗ 합 계 (1+2+3)											
---------------	--	--	--	--	--	--	--	--	--	--	--

(뒤 쪽)

작성방법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계정과목(① ~ ③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 ~ ⑨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⑥)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⑩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⑫, ⑬ 동일)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계정과목(⑬~⑮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⑯~㉑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 (⑳)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라.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나. 구분(㉒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41	42	43	44	45	46

- 다. 계정과목(㉓~㉕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㉖~㉘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㉗)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서식 2 |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2024.7.20	교통여비	2,300,000	대표자	국외출장	1,000,000	⑧	⓪	N
			대표자	면세점 지출	1,300,000	④	Y	Ⓝ
소 계								

* 사용구분

- ① 쇼핑물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 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2024.9.20.	복리후생비	1,000,000	가능	유상무	④	대리	1,000,000	Y	Ⓝ
2024.10.2.	복리후생비	500,000	가능	이직원	②	인턴	500,000	⓪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 3 |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특수 관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법령§2 (정의)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직원에 대한 급여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대출이자율(원칙 : 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 단,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 익금산입 요건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 5%(법령§88③)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서식 4 | 업무무관가지금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 차 대조표 등 계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손 금 불산입 대 상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 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가지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금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금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예	아니오
업무무관 부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 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예	아니오
업무무관 동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5 | 대손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손 가능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ii. 금융회사 등(법령§61②)이 행한 채무보증 iii.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i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v.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함 ②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금 	예	아니오
대손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⑤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⑤-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⑨-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⑩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30에 따른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예	아니오

2025 법인세 신고안내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②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 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ii. 금융감독원장이 i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손 금 공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금으로 공제한 사업연도가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사유 ①~⑥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손사유 ⑦~⑬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예	아니오
상각채권 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로서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적정하게 세무조정 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 	예	아니오

서식 6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업 무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 -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예 아니요								
부담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음(법령§40①) 	예 아니요								
지출 증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등, 계산서,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는지(미수취시 한도액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예 아니요								
손금 산입 한도액	<p>기본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검토 -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예 아니요								
	<p>수입 금액별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별 한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검토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법§25④(2))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수입금액</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하</td> <td>0.3%</td> </tr> <tr> <td>100억원 초과</td> <td rowspan="2">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td> </tr> <tr> <td>500억원 이하</td> </tr> <tr> <td>500억원 초과</td> <td>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td> </tr> </tbody> </table>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법령§42②)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등의 임대수입, 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예 아니요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검토 - 국내 문화관련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검토 - 전통시장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 	예 아니요								

서식 7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① 업무용 승용차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예	아니오
② 관련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적정한지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예	아니오
③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일부기간 가입 : 가입일수 비율만큼은 손금산입 검토대상에 포함 	예	아니오
④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고시 대상 법인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번호판 부착여부 - 법인 전용판 부착 대상 차량이 해당 번호판 미부착시 해당 차량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 취득가액 8천만원이상, 자가·리스·렌트(대여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한정) 	예	아니오
⑤ 업 무 사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비치하였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실제 업무용 사용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사용비율을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⑥ 감가상각비 (상 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적정여부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하였는지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계산 적정여부 - 보유·임차기간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 월할계산 여부 -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 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령§42② 규정 해당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⑦ 소득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처분 적정여부 -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예	아니오
⑧ 매각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매각손실 발생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손실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적정여부 	예	아니오

서식 8 |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공제 대상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공제 여부	상기 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①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②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한 이월결손금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총당된 이월결손금	예	아니오
수정경정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공제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는지 여부 ① 조특법§6①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ii)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iii)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iv)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v)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51의2① 각 호 및 조특법§104의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vi)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 vii) 조특법§74①(4,5,6호 제외) 또는 ④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2024.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② ①외의 내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예	아니오
공제 제한	①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i)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ii)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i)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ii) 적격분할에 따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제한 i) 양수법인의 사업양수일 현재 이월결손금 :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ii) 사업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특수관계인간 양수도로서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70%, 순자산의 90%이상을 이전한 경우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9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과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92의3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법§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주택 및 별장(법법§55의2①, 법령§92의2②)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 아니오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토지(10%) • 주택 및 별장(2021.1.1.이후 양도분 20%)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20%) • 미등기자산(40%) 	예 아니오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3.16.~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법률 제9673호 부칙4조) • 토지를 취득 한 후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음(법법§55의2③, 법령§92의11③, 법칙§46의2③) 	예 아니오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법§55의2④, 법령§92의2④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 시는 과세 	예 아니오	
비사업용 토지 소유기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목 본래 용도 외 등으로 사용한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아래 ①~②(또는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단, 법령§92의11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법법 §55의2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예 아니오	
	3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단,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②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3년이상 ~ 5년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소유기간의 40(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예 아니오
양도소득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등 양도소득(법법§55의2⑥) = 양도금액 -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단, 비영리법인이 19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는 법법§55의2⑥ 참조 • 2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 시 법법§55의2⑥에 따른 계산금액을 합산 	예 아니오	
양도소득 귀속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령§68① 규정을 준용 • 장기할부조건(법령§68④)의 경우 법령§68①③ 규정에 의함 	예 아니오	

서식 10 | 성실신고 확인제도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i)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 관계인 근로자 ㉡ 소득령§196①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div>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오</td> </tr> </table>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 '18. 2. 13.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 * '22. 1. 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과 법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조특법§104의31①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확인서 제출	②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서식 11 |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한도 초과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제외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조세 조약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타 적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을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자회사 지분 25%(해외자원 개발사업 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공제대상 범위액} = \frac{\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times \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②와 ③은 50%) (②,③의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세액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②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③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 것인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12 |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업종 기준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지 여부</p> <p>*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p>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업종별 규모 기준	<p>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table border="1"> <tr> <td>주된 업종</td> <td></td> </tr> <tr> <td>매출액</td> <td>백만원</td> </tr> </table> <p>*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① 중소기업 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 미해당 →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p> <p>참고 '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연장(3 → 5년)되며, 코스파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p>	주된 업종		매출액	백만원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주된 업종								
매출액	백만원							
예	아니오							
졸업 기준	<p>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table border="1"> <tr> <td>자산총액(5,000억원 미만)</td> <td>백만원</td> </tr> </table>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오							
별도 기준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p>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립성 기준	<p>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p>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p>★ 관계기업 총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p>	<table border="1"> <tr> <td>예</td> <td>아니오</td> </tr> </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025 법인세 신고안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동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 13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기준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table border="1"> <tr> <td>예</td> <td>1번 이등</td> </tr> <tr> <td>아니오</td> <td>2번 이등</td> </tr> </table>	예	1번 이등	아니오	2번 이등	
예	1번 이등							
아니오	2번 이등							
감면율	1번 소기업	수도권 내	<table border="1"> <tr> <td>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td> <td>10%</td> </tr> <tr> <td>제조업 등</td> <td>20%</td> </tr> </table>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제조업 등	20%						
	수도권 외	<table border="1"> <tr> <td>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td> <td>10%</td> </tr> <tr> <td>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td> <td>15%</td> </tr> <tr> <td>제조업 등</td> <td>30%</td> </tr> </table>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제조업 등	30%							
2번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제조업 등	15%					
감면대상 소득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한도액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예 아니오					

2025 법인세 신고안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품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 14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22년부터 8천만원) 이하 기업 포함	예	아니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제2조제2 요건(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종료 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 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조특령§6⑥)	예	아니오	
업종 요건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조특법§6③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오	
감면 율	감면 대상 ①	가.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조특령§5①)	감면율 100%	
		나. '18.5.28. 이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조특령§5①)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다. 청년창업기업의 "나" 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감면 대상 ①②	라.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22년부터 8천만원) 이하 기업	감면율 100%	
		마.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바.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수입금액 4천800만원('22년부터 8천만원) 이하 기업	감면율 50%		
	감면 대상 ③④	사. 벤처기업 확인일(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감면 대상 ①~④	아. '18.1.1. 이후 창업·확인·해당하는 ①~④ 기업으로써 신성장 서비스업 (조특령§5①)을 영위하는 기업의 최초 세액감면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75%	
자. "아" 적용 후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의 과세연도		감면율 50%		
추가 감면	차. 위 "나", "다", "마", "사", "아", "자"의 감면율에 더하여 전년대비 고용증가율×1/2 감면(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감면율 50%(23%) 한도	예	아니오
* 감면대상, 창업,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적용 *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15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의2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17의3①에 따른 연구소등							
공제대상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분 류		해당 여부				
비용	신성장·원천기술 ¹⁾ 연구개발비			예	아니오		
	국가전략기술 ²⁾ 연구개발비						
일반 ³⁾ 연구·인력개발비							
1) 조특법§10조①(1) 및 법령 별표7의 신성장·원천기술 2) 조특법§10조①(2) 및 법령 별표7의2 국가전략기술 3) 조특법§10조①(3)							
(유의사항)							
①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연구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제외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제외 ④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포함되나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제외 ⑤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입비용은 제외되나 해당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적정하지 여부			예	아니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일반기업		
			최대 40%(30%+α)	최대 40%(25%+α)	최대 30%(20%+α)		
* α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최대 50%(40%+α)	최대 40%(30%+α)			
* α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3. 일반 연구·인력개발비(①, ② 중 큰 것)							
①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25%(중견기업 40%)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 ('15년 이후) 직전연도							
③ 당기분 방식							
			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0~2*
* '0% + 최대 2%{(R&D비용/수입금액) × 1/2}							

서식 16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연구소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령§제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령§2⑤(7)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예 아니오
겸업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회사의 수익사업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기술영업 등의 일반 매출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연구소등 에서 상시근무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이 연구소등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 조직도(연구소 조직도), 인사발령서류(근무부서, 발령일), 연구소 내부 도면 등을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인건비 해당 여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다음의 인건비 등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① 소득법§22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법§29 및 법법§33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령§44의2②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령§제40의2①(2)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예 아니오

서식 17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개발용역	<p>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것</p> <p>○ 연구개발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 - 신성장 R&D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의 경우는 국내 소재 연구 기업으로 한정 (다만, ①임상 1상-3상 시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국외기업은 위탁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 서비스R&D는 자체R&D 한정하여 인정(과학기술분야 결합된 서비스 R&D의 경우 위탁·공동연구개발도 인정) 	예 아니오
위탁·재위탁 연구개발 기업	<p>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조특령」 별표6.1. 나.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재위탁 포함)할 것</p> <p>○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 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p>○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p>	예 아니오
정부출연금면리	<p>○ 조특령§9①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특법§10의2①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 받아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예 아니오

서식 18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오																	
고용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table border="1"> <tr> <td>① 상시근로자* 수</td> <td>명</td> </tr> <tr> <td>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td> <td>명</td> </tr> <tr> <td>③ 증 감(①-②)</td> <td>명</td> </tr> </table>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특령§23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령§4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령§196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공제 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예	아니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서식 19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고용요건	<p>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text{해당 기간의 개월 수}}$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상시근로자*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증 감(①-②)</td> <td style="text-align: center;">명</td> </tr> </table> <p>*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령§4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령§196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또는 부담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div>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감면율	<p>① 청년</p> <p>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인 경우 * 병역이행시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p>	감면율 100%	예	아니오					
	<p>② 경력단절 여성</p> <p>해당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후, 퇴직한 날부터 3년('22.1.1. 고용부터 2년)이상 15년 이내에 동종업종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p>	감면율 100%							
	<p>③ 신성장 서비스업</p> <p>소득령§27의4⑤에 따른 신성장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p>	감면율 75%							
	<p>④ 이 외 상시근로자</p> <p>①, ②, ③외 상시 근로자인 경우</p>	감면율 50%							

서식 20 |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제외)	예	아니오																						
공제 대상 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 토지, 건축물, 차량, 비품 등은 공제대상 제외 (조특령§21②) ②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적인 자산(조특령§21③)에 해당하는지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취득하는 지식재산(특허권·실용 신안권·디자인권)에 해당하는지(조특령§21③)	예	아니오																						
투자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는지(조특법§130①·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시 공제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대체투자</th> <th>증설투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중소기업</td> <td>○</td> <td>X¹⁾</td> </tr> <tr> <td rowspan="2">그 외 기 업</td> <td>'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td> <td>○</td> <td>X¹⁾</td> </tr> <tr> <td>'90.1.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td> <td>X²⁾</td> <td>X¹⁾</td> </tr> </tbody> </table> 1)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2) 방송장비·정보통신장비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은 공제가능	구 분		대체투자	증설투자	중소기업		○	X ¹⁾	그 외 기 업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	X ¹⁾	'90.1.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	X ²⁾	X ¹⁾	예	아니오							
구 분		대체투자	증설투자																						
중소기업		○	X ¹⁾																						
그 외 기 업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	○	X ¹⁾																						
	'90.1.1.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 또는 이전	X ²⁾	X ¹⁾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7)</td> <td>10(12)</td> <td rowspan="2">3(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8)</td> <td>12(14)</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15</td> <td>25</td> <td>4(10)</td> </tr> </tbody> </table> * '25.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는 ()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됨, 단, 공제율은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적용 공제율과 상이함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예	아니오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2025 법인세 신고안내

서식 21 | 최저한세 적용 여부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제외 대상	조특법§72①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최저한 세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유예(4년간)		7%	예	아니오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년차		9%		
	일반기업	과세 표준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적용 대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음의 세액공제·감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특법§132①) ①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 등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본사,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이전 등 ②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③ 면제 및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만 해당),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지역특구감면(50% 감면하는 기간만 해당) 등			예	아니오
적용 예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지역특구*에 대한 감면 중 100%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등			예	아니오
	생계형 및 청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 100%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에 해당하는지			예	아니오
우선 적용	최저한세 대상으로 열거된 공제·감면 등(적용대상 ① ~ ③)에 해당하여 최저한세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예	아니오

서식 22 | 기부금 관련 주요사항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손금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
기부금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기부금 단체인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위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예 아니오
특례 기부금	기부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법법§24②(1)라목에 해당하는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법§24②(1)라목에 해당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예 아니오
	손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50% * 법법§44, §46 및 §46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예 아니오
일반 기부금	기부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 (특례기부금은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39①(1)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법령§39①(1)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지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 법령§39①(2) 각 목 각목의 기부금 법령§39①(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법령§39①(6)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예 아니오
	손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사회적 기업은 20% 적용 	예 아니오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복지기준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예 아니오
	손금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80% 또는 100%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30% 	예 아니오
비지정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 	예 아니오

2025 법인세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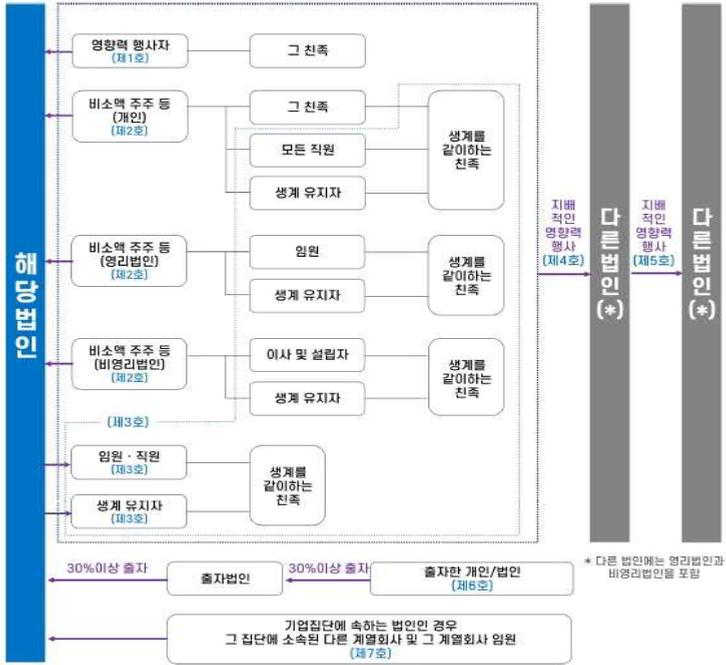
서식 23 |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업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및 관광유희음식점업은 제외) </div>	예 아니오																	
고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80%;">① 상시근로자* 수</td> <td style="width: 20%;">명</td> </tr> <tr> <td>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td> <td>명</td> </tr> <tr> <td>③ 증 감(①-②)</td> <td>명</td> </tr> </table> <p>*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특령 §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령§4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기령§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령§196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div>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예 아니오											
① 상시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기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다음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중소기업</th> <th rowspan="2">중견기업</th> <th rowspan="2">대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그 외 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p>*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34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p>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예 아니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450	1,550	800	400															
추가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였는지 여부 (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td> <td>1,300</td> <td>900</td> </tr> </tbody> </table>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예 아니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규직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서식 24 | 동일 과세연도 공제·감면 중복여부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중복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의 ①세액감면과 ②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p>① 세액감면</p> <p>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파.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더.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어. 기획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p> <p>② 세액공제</p> <p>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①세액감면의 '나와 중복 가능) 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자.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카.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p>	예 아니오
유의 사항	'①세액감면'을 선택한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②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신청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①세액감면의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적용하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적용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서식 25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검토서식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적용 대상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중 국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여부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법§72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행위 당시(거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p>※ 제4호 및 제5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p> <p>①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p>	예 아니오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경제적 합리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거래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인지 여부 법령§88①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예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발생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세부 유형(법령§88①)</th> <th>기준금액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자산금전 등의 거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현물출자 제3호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 또는 현물출자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부, 제공 제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용역을 고가로 차용, 제공받은 경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3억원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시가 × 5% </td> </tr> <tr> <td>기타거래</td> <td>▶ 제9호 중 자산, 금전 등의 거래와 유사거래</td> <td></td> </tr> <tr> <td rowspan="5">조세 부담 감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호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 합병(단,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익규모 요건만 적용) 제8호 불공정 증자 중 신주 저가 고가 발행 & 실권주 미배정 제8호 불공정 감자 제8호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신주 고가 인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3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td> </tr> <tr> <td>자본거래</td> <td>▶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사채 등 인수, 취득 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1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td> </tr> <tr> <td></td> <td>▶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 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규모 1억원 이상 <p>* 단, 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p> </td> </tr> <tr> <td></td> <td>▶ 그 외 제8호, 제8호의2</td> <td>없음</td> </tr> <tr> <td>기타거래</td> <td>▶ 그 외 제9호 거래</td> <td>없음</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 유형(법령§88①)	기준금액 요건	자산금전 등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현물출자 제3호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 또는 현물출자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부, 제공 제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용역을 고가로 차용, 제공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3억원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시가 × 5% 	기타거래	▶ 제9호 중 자산, 금전 등의 거래와 유사거래		조세 부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호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 합병(단,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익규모 요건만 적용) 제8호 불공정 증자 중 신주 저가 고가 발행 & 실권주 미배정 제8호 불공정 감자 제8호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신주 고가 인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3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자본거래	▶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사채 등 인수, 취득 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1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규모 1억원 이상 <p>* 단, 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p>		▶ 그 외 제8호, 제8호의2	없음	기타거래	▶ 그 외 제9호 거래	없음
구 분	세부 유형(법령§88①)	기준금액 요건																							
자산금전 등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현물출자 제3호 자산의 무상·저가 양도 또는 현물출자 제6호 금전, 그 밖의 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부, 제공 제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용역을 고가로 차용, 제공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단,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3억원 ㉡ 시가 - 거래가액 (또는 거래가액 - 시가) ≥ 시가 × 5% 																							
기타거래	▶ 제9호 중 자산, 금전 등의 거래와 유사거래																								
조세 부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호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 합병(단,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익규모 요건만 적용) 제8호 불공정 증자 중 신주 저가 고가 발행 & 실권주 미배정 제8호 불공정 감자 제8호의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신주 고가 인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3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자본거래	▶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사채 등 인수, 취득 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 총족 ㉠ 이익규모 1억원 이상 ㉡ 이익률 30% 이상 																						
		▶ 제8호의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분여 중 전환가능기간 중 전환·양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규모 1억원 이상 <p>* 단, 전환으로 인수한 주식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요건 미적용</p>																						
		▶ 그 외 제8호, 제8호의2	없음																						
	기타거래	▶ 그 외 제9호 거래	없음																						